

신구조문대비표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7115호, 2016.4.29., 타법개정]	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7357호, 2016.7.19., 일부개정]
<p>제25조의2(사전 통지)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점검대상 시설물, 점검 사유, 점검 항목을 말한다.</p>	<p>제25조의2(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공표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·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.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<p>② 국토교통부장관,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2.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실태 3.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.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<p>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국토교통부,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·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.[본조신설 2016.7.19][중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]</p>
<p><신 설></p>	<p>제25조의3(사전 통지) 법 제33조의2제3항 본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점검대상 시설물, 점검 사유, 점검 항목을 말한다.</p>
<p>제27조의2(업무의 위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7조의2(업무의 위탁 등) ① - - - - - - - - - - 제7호 - - - - - - - - - - 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9조(과태료의 부과)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,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.</p> <p>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,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11호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. 다만,</p>	<p>제29조(과태료의 부과) 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제11호,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, 제17호의2 및 제18호에 따른 - - - - - .</p> <p>②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제11호, 제16호, 제17호,</p>

